

국민의 정부

이념 목표 기본방향

이념 목표 부

발 간 사

올해로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지 5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과 북은 국제적 냉전질서속에서 대결과 반목을 거듭해 왔으며, 그 결과 민족역량이 낭비되는 가운데 남북간의 상호 이질성도 심화되어 왔습니다.

냉전체제가 붕괴됨으로써 분단의 '외적 요인'이 사라진 지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성숙으로 남북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우리는 지혜와 역량을 모아 차분히 그리고 꾸준히 통일에 필요한 준비를 하나씩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통일교육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다원화되고 성숙해짐에 따라 이제 통일교육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면서 교수내용과 방법을 새롭게 개선·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95년판 통일교육지침서가 발간된 이래 내외의 통일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기대나 인식에 있어서도 적지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급 교육현장과 관계전문가들로부터도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통일교육지침서를 새로 펴내면서 이러한 의견들을 광범위하게 받아들여 각 주제항목의 해설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지침서가 통일교육의 일선에 널리 보급되어 국민들에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올바른 통일의식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1998. 11. 18.

통일부장관

차 례

1. 통일교육의 의의와 과제 / 1p

2. 통일교육 기본지침 / 5p

- 통일의 의미와 당위 · 12
- 통일문제의 성격 · 15
- 통일논의의 범위 · 17
- 분단의 원인과 심화 · 19
- 분단의 폐해 · 21
- 북한체제의 특성 · 23
- 북한위기의 본질 · 26
- 북한의 인권문제 · 28
- 북한의 대남공세 · 30
- 국제질서의 변화 · 32
- 주변국의 대한반도정책 · 34
- 남북관계의 변화 · 36
- 통일의 촉진 · 장애요인 · 39
- 분단국 통일의 교훈 · 42
- 대북정책 추진원칙 · 44
- 대북정책 추진기조 · 46
- 통일의 방법 · 48
- 남북대화 · 50
- 한반도 평화문제 · 52
- 남북기본합의서 · 54
- 남북교류협력 · 56
- 대북지원 · 58
- 대북경수로 지원 · 60
- 통일사회의 미래상 · 62
- 통일을 위한 준비 · 64

3. 실행상의 유의점 / 67p

● 부 록 / 77p

- 남북기본합의서 · 79
- 북한 헌법 · 83

1

통일교육의 의의와 과제

통일교육의 정의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통일교육의 과제

통일의지의 고취

통일교육은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지닐 수 있도록 추진하되, 통일 은 폭력적 수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족구성원의 자유의사에 바탕한 평화적 통일이야 함을 강조한다.

통일문제에 대한 판단능력의 배양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에 기초하여 통일문제 전반에 걸쳐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국민의 인식능력 배양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 스스로 통일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주장과 논의를 비교·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하여, 맹목적이거나 환상적인 통일론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

통일 위협요소에 대한 경계

통일정책은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에 있어서도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의 주권과 국체,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는 제반 요소에 대한 현실적 경계심을 갖추도록 하는 일은 중요하다. 특히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뚜렷한 변화가 없는 현실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확고히 인식시켜야 한다.

민족공동체 속에서의 삶 준비

통일교육은 남과 북 사이의 적대의식과 불신감을 해소하고 서로가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의식과 태도를 길러, 앞으로 이룩해 나갈 민족공동체 속에서의 복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실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우리 민족이 공유해 온 문화전통에 대한 강조를 통하여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시키고, 민족자존을 북돋우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효과적으로 견집시키고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사회구성원들의 민주시민적 자질에 달려있다. 따라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은 우리 사회가 통일문제에 있어 내부적 화합과 단결을 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자, 통일 이후의 바람직한 삶을 준비하는 데도 필수적이다.

2

통일교육 기본지침

다음에 열거된 25개의 주제항목은 최근의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각종 통일 교육활동에서 강조해야 할 사항들을 선정한 것으로서, 항목별 내용설명과 특히 유의해야 할 지도관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제시된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지도내용과 방법은 이 책의 지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교수요원 각자가 개발하여 시행할 것을 권장한다.

12p

통일의 의미와 당위

통일은 한반도에 하나의 민족국가·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새롭게 건설하는 일로, 민족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계기이자,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길이다.

15p

통일문제의 성격

통일문제는 민족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이다. 통일문제 해결에 있어 배타적 민족주의나 맹목적 세계주의는 배격되어야 한다.

17p

통일논의의 범위

개방적인 통일논의는 바람직하고 필요하다. 자유민주체제의 기본가치와 행동규범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9p

분단의 원인과 심화

분단은 우리 민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지만, 우리 민족 내부의 분열에 의해 심화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분단은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우리 스스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21p

분단의 폐해

분단은 민족구성원에게 개인적 고통과 희생을 강요함은 물론, 민족이질화를 심화시키고 민족역량을 낭비케 함으로써 민족번영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23p

북한체제의 특성

북한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 아래있는 전체주의적 독재체제이자, 집단주의를 바탕으로 한 폐쇄·통제 사회이다.

26p

북한위기의 본질

북한체제가 처해 있는 위기의 본질은 구조적 한계에 봉착한 경제체제, 폐쇄적·호전적 정치체제 등 체제내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체제진반에 걸친 근본적 개혁이 없는 한 북한의 미래는 밝을 수 없다.

28p

북한의 인권문제

북한에서는 불행히도 기본적 인권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북한체제의 비민주성 때문이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해결노력이 필요하다.

30p

북한의 대남공세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이 내걸고 있는 각종 주장들은 공산화 통일전략에 기초한 것으로서, 내부문제를 간섭하지 않기로 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32p

국제질서의 변화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진영대결이 와해된 오늘날의 세계질서는 우리 민족에게 분단이후 그 어느때보다 통일에 유리한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다.

34p

주변국의 대한반도정책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유지에 초점이 맞추어진 주변국의 대한반도정책과 우리의 통일정책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동적 노력이 필요하다.

36p

남북관계의 변화

냉전 이후, 북한경제의 위기와 남북한 체제역량 격차의 심화로 남한 주도의 통일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남한당국을 기피하려는 북한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포용적 입장에서 통일논의를 주도해 가고 있다.

39p

통일의 촉진·장애요인

남북간의 교류협력, 남한의 민주화과정 등은 통일의 촉진요인이요, 반면 북한의 지속적 대남 혁명진략과 상호불신, 이질화현상 등은 통일의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다.

42p

분단국 통일의 교훈

분단국의 통일경험은 통일이전에는 분단의 안정적 관리가, 통일과정에서는 주변국의 지지와 협조가, 통일이후에는 민족의 내면적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교훈으로 주고 있다.

44p

대북정책 추진원칙

대북정책의 3대 추진원칙은 △무력도발 분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이다.

46p

대북정책 추진기조

대북정책의 추진기조는 △안보와 협력의 병행 추진, △평화공존 및 평화교류의 실현, △화해·협력을 통한 북한변화 유도, △남북상호이익 도모,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추진이다.

48p

통일의 방법

우리의 통일정책은 평화적 방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것이다.

50p

남북대화

남북 대화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첫걸음이다.

52p

한반도 평화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우리는 남북간 당사자 문제로 보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미국과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대립되고 있다.

54p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한 기본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남과 북은 이를 성실히 지켜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56p

남북교류협력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는 남북한간의 불신관계를 신뢰관계로, 대결구조를 평화구조로, 이질화된 민족사회를 동질적 민족사회로 만드는 데 큰 의의를 지닌다.

58p

대북지원

북한에 대한 지원은 일방적인 시혜의 차원을 벗어나 북한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60p

대북경수로 지원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은 우선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 시킴으로써 안보위협을 제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유지와 통일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다.

통일사회의 미래상

통일조국은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복지·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선진 민주국가이어야 한다.

통일을 위한 준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통해 우리 사회를 번영하는 민주공동체로 키워나가는 일이야말로 통일을 앞당기고, 준비하는 지름길이다.

통일의 의미와 당위

통일은 한반도에 하나의 민족국가·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새롭게 건설하는 일로, 민족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계기이자,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길이다.

통일은 원래 하나였던 우리 민족이 서로 적대적이고 상이한 정치·사회체제 속에서 살고있는 현재의 상태를 극복하고, 하나의 민족국가·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새롭게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국토도 하나(국토통일), 제도도 하나(정치적 통일), 민족도 하나(민족통일), 생활도 하나(경제·사회·문화적 통일)로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왜 통일을 달성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민족사적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 정치·안보적 측면 그리고 미래발전적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민족사적 측면에서의 당위

첫째,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한반도라는 지리적 공간 속에서 단일 국가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동시에 단일 민족으로서의 역사적 정체성을 유지해 왔었다. 분단은 민족의 자주적 의사와 관계없이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강대국에 의해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반역사적 현상이며 반드시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둘째, 통일은 '민족사의 정상화'를 위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단일민족인 우리에게 있어 분단은 민족을 분열시키고 갈등과 대립을 조장시키는 비정상적인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단일 민족의식'의 고유한 전통을 가지고 세계 속에서 민족사의 진운(進運)을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당위

첫째, 이산가족의 고통과 한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산가족의 재결합은 가장 인도적인 문제이며 인간의 보편적 권리이다.

둘째, 분단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남북한의 이질화를 크게 심화시켰다. 이질화는 상호분신과 갈등, 반목과 대결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민족의 정체성마저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따라서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통일은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셋째, 통일은 남북간의 대결과 경쟁에서 발생하는 민족역량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절실히 요구된다. 남북대결로 인한 엄청난 군사비 지출 등 경제적 손실을 막고 이를 민족의 번영과 발전의 동력으로 쓰기 위해서도 통일은 시급한 과제이다.

정치·안보적 측면에서의 당위

첫째, 남북한이 모두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되고 평화로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

서도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한다면 '민족공멸'의 결과가 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통일은 하루빨리 성취되어야 한다.

둘째, 통일은 민주주의의 원칙과 제도를 발전시키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다. 통일이 되면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로운 정치참여와 의사결정을 활성화시켜 북한 동포들도 발달된 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통일은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전쟁위협을 해소시킴으로써 동북아지역의 안정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발전적 측면에서의 당위

첫째, 통일은 우리 민족의 발전무대를 진한반도로 확대시켜 줄 것이며 나아가 민족역량을 강화시켜, 우리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한층 가속화시킬 것이다.

둘째, 통일한국은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의 강화로 동북아지역내 질서 확립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공동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 강조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이 되면 우리 민족은 무한한 발전과 도약의 계기를 맞게 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지난 40여년에 걸친 우리의 급속한 경제발전의 지력과 민주주의 역량은 통일국가가 실현되었을 때 국가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의 당위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분단으로 인하여 나 자신은 어떤 제약을 받고 있는가, 통일이 나에게 가져다 줄 혜택과 이익은 무엇인가 등의 물음을 던져 통일의 필요성을 자신의 삶과 연계시켜 일깨우도록 해야 한다.

통일문제의 성격

통일문제는 민족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이다. 통일문제 해결에 있어 배타적 민족주의나 맹목적 세계주의는 배격되어야 한다.

한반도 통일은 1차적으로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로서 남북한 당사자들간의 논의와 협상을 통해 해결할 문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 내에서 통일문제의 해결을 위한 확고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유지되어야 한다. 통일을 왜 해야하고 또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이 용이해질 수 있다. 아울러 민족적 일체감을 바탕으로 남북한 주민들이 하나의 민족성원임을 다 같이 확인할 수 있을 때 민족내부로부터의 통일추구는 한층 더 용이해질 수 있다.

그러나 탈냉전시대의 도래로 통일문제를 민족 내부의 힘으로 풀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은 사실이나, 한반도문제에 대한 국제적 영향력은 아직도 엄존하고 있다. 분단이 주변 강대국들에 의한 외부적 요인에서 비롯되었듯이, 통일문제 역시

현실적으로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와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통일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국제정세의 변화추이와 주변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그들과의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우리의 노력을 지지하고 후원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통하여 통일에 유리한 외적 환경을 능동적으로 조성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미 안보협력, 일본과는 경제 및 정치적 협력, 그리고 중국 및 러시아와도 경제협력은 물론 정치·군사적으로도 상호 선린 우호관계가 심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주제를 다룰 때는 다음 사항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첫째, 통일을 성취하는데 있어 우리 민족의 자주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해야 한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남에 의존하거나 외세를 빌려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역사적 사례를 들어 설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한의 화해와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하여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구현하여 지역경제와 평화에 기여함으로써, 주변국으로 하여금 남북통일의 긍정적 측면과 필요성을 인정하도록 하는 우리의 적극적 자세와 노력이 필요함을 이해 시킨다.

통일논의의 범위

개방적인 통일논의는 바람직하고 필요하나, 자유민주체제의 기본가치와 행동규범이 존중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은 민족구성원 모두의 이해가 걸려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통일논의는 민족구성원이면 누구나 자기의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개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으며, 통일에 대한 참여의식도 높여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통일에 대한 인식은 세대간, 계층간에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세대 및 계층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논의는 자유민주체제의 기본가치와 행동규범이 존중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논의에서 존중되어야 할 우리 체제의 기본가치와 행동규범은 헌법과 실정법 체계에 반영되어 있다. 통일논의는 이러한 실정법적 한계와 질서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주제에서는 다음의 몇가지 점에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자기 주장만이 옳다는 독단론은 경계되어야 한다. 자기 주장만이 옳다는 비타협적이고 편파적인 사고야말로 통일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와 참여를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둘째, 감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논의와 주장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통일에 대한 환상적 기대나 막연한 감상에 빠진 나머지 실현불가능한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국론의 분열을 초래할 위험성이 큰 것이다.

셋째, 극단론이나 흑백논리는 경계되어야 한다. 통일문제에 대한 가치판단과 선택에 있어서는 다양한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야 한다.

넷째, 위장된 통일논의는 배제되어야 한다. 통일논의를 빙자하여 숨겨진 또다른 목적을 달성하려는 기도는 건설적이며 생산적인 통일논의의 전개를 저해한다.

분단의 원인과 심화

분단은 우리 민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지만, 우리 민족 내부의 분열에 의해 심화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분단은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우리 스스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더불어 38선이 확정되고, '48년 한반도에 대립된 두 개의 정부가 탄생함으로써 남과 북의 분단의 역사는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진영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진영간의 냉전구조는 분단을 반세기 넘도록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아울러 민족내적 요인들도 분단을 고착화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독립운동 세력은 여러 갈래의 이념노선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었으며, 통합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대결은 해방정국에서도 재현되어, 새로운 국가 건설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앞에 두고도 한계를 노정하였다.

분단 초기 지도자들 사이에는 대립과 분열이 있었지만, 그래도 남북주민들간의 동질의식은 강하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동족상잔의 6·25전쟁을 겪은 후에는 민

족의 동질성마저 사라지고, 이로 인해 심화된 적대감은 민족의 재결합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결국 6·25전쟁은 국제적으로는 한반도를 동서냉전의 전초 기지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남북의 분단을 고착시켜 같은 민족 사이의 불신과 적대감을 심화시킨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이 주제의 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단이 타율적 요인에 의해서 초래되었지만 민족 내부의 갈등과 대립으로 더욱 심화되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거울삼아 먼저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는 길이 분단을 해소하는 지름길임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둘째, 6·25전쟁이 우리 민족 모두에게 얼마나 큰 희생과 고통을 안겨주었는지, 또 그 영향이 오늘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특히 전후세대들에게 정확히 인식시키고, 우리가 아직도 불안한 휴전체제속에 살고 있음을 환기시켜 주도록 한다.

셋째,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남북관계의 개선과 자주적 평화통일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 그리고 평화를 파괴하는 자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갖추며, 평화를 지킬 수 있음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분단의 폐해

분단은 민족구성원에게 개인적 고통과 희생을 강요함은 물론, 민족이질화를 심화시키고 민족역량을 낭비케 함으로써 민족번영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분단과 그로부터 파생된 문제점은 남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첫째, 분단은 군사안보문제를 남북한 모두의 최우선 관심사로 만들었으며, 남북간의 군비경쟁은 한정된 재원의 상당부분을 우선 군비로 지출하도록 했다.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도 국민총생산의 25% 이상을, 남한은 이보다는 훨씬 적지만 3% 내외를 국방비에 투입하고 있다.

둘째, 분단은 국민생활 전반에 걸친 제약을 불가피하게 했다. 북한 당국의 인민에 대한 계층 및 성분분류, 국가안전보위부 등 각종조직을 통한 철저한 감시체제, 배급제도 등을 통한 사회생활 통제, 이중삼중의 조직생활 등은 자유로운 사생활의 영역을 극도로 위축시켜 놓았다. 이와 더불어, 북한 당국이 자행하고 있는 인권유린도 분단에서 파생된 것이다. 한편 남한에서도 국가보안법을 필요로 하는

등 남북한 주민이 겪는 고통과 불편은 적지 않다.

셋째, 국제사회에서도 남북한은 각기 지지세력 확보를 위한 치열한 외교적 경쟁과 재원 낭비를 감수해야 했다. 이를테면 유엔에서의 표대결, 필요 이상의 해외공관 확보, 상호비방 등 국력을 소모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분단은 1천만 이산가족들에게는 이산의 아픔과 망향의 한을 안겨주고 있으며, 북한주민에게는 인권유린의 고통을 겪게 하고 있고, 민족구성원 모두에게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을 제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분단은 민족간의 심각한 정치·이념적 갈등을 심화시켰고,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군비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소모적 대외경쟁과 대결에 휘말리게 하는 등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여 왔다. 우리 민족은 더 이상 체제경쟁으로 민족적 역량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 화해와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해 공존공영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

이 주제의 교육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단의 장기화가 오늘날 개인 및 민족 전체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결과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일깨워주어야 한다.

둘째,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과 실향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하고, 나아가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해결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한다.

북한체제의 특성

북한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 아래있는 전체주의적 독재체제이자, 집단주의를 바탕으로 한 폐쇄·통제사회이다.

통일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인 북한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체제의 실상과 허상, 본질과 한계 등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때,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고, 이러한 공감대 속에서만 정부의 통일정책이 힘있게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 상대로서의 북한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북한체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제를 들 수 있다. 북한은 1당 독재체제로서 당이 국가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는 북한 헌법 제11조는 당이 국가권력의 원천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실제로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하에 통치되는 체제로, 이는 주체사상에서의 '수령론'이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김정일

이 수령의 영도체계를 “수령의 사상과 명령, 지시에 따라 전당·전군·전민이 하나같이 움직이는 체계”(『주체사상에 대하여』, '82)라고 규정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수령의 유일적 영도는 북한 권력체계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사회주의국가가 당 중심체제인 반면 북한은 수령 중심체제인 것이다.

둘째, 북한의 모든 정책과 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워지는 것이 주체사상이다. 북한은 주체사상이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사람중심의 사상’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주체사상의 큰 모순은 ‘인민대중’이 당과 수령의 지도를 올바르게 받아야만 혁명과 건설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소위 ‘지도’이론 부분이다. 이러한 주체사상은 대내적으로는 독재체제를 정당화하고, 대외적으로는 폐쇄체제를 합리화하는 배타적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다.

최근 북한은 김정일시대의 구호로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과 결사옹위 정신으로 요약될 수 있는 소위 ‘붉은기 사상’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 또한 최악의 경제난 속에서 김정일에 대한 충성과 복종을 강요하는 구태의연한 논리일 뿐 새로운 내용을 담았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이다. 계획경제체제는 생산으로부터 유통과 분배에 이르기까지 중앙에서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북한경제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막대한 규모의 군비지출 및 동구·소련 등 구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로 인한 대외무역관계의 붕괴 등으로 오늘날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1998년 9월 개정헌법에서는 계획경제체제의 틀 속에서 극히 초보적이거나 마윈가, 가격, 수익성과 같은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는 조짐이 있어 그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넷째, 북한은 집단을 개인에 우선하는 집단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집단주의 원칙은 내적 결속, 동원, 생산경쟁, 사회생활에서의 기본원리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및 다원주의를 집단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해로운 것으로 본다.

이 주제를 다룰 때는 다음 사항들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체제의 최대의 특징은 수령의 존재와 역할에 있다. 북한만의 독특한

개념으로서의 '수령'이란 무엇이며, 이러한 '수령론'이 북한체제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한다. 더 나아가 혁명적 수령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한계와 허상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북한 주민의 생활상에 대한 소개는 그 외형적 모습보다는 실제적 삶의 내용을 사실 그대로 알려주고 이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북한 당국이 의도적으로 선전하는 내용을 마치 북한의 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북한위기의 본질

북한체제가 처해 있는 위기의 본질은 구조적 한계에 봉착한 경제체제, 폐쇄적·호전적 정치체제 등 체제내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체제전반에 걸친 근본적 개혁이 없는한 북한의 미래는 밝을 수 없다.

'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하자, 김정일 체제가 오래 가지못해 붕괴한 것이라는 예측을 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현재 북한체제가 외형적으로는 안정되어 보이나, 김정일이 군부에 의존하여 통치하고 국제사회에 대하여 식량지원을 호소할 정도로 북한의 체제역량은 결정적으로 약화되었다.

북한이 처해있는 위기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위기이다. 이점이야말로 김정일 정권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장 절박한 문제이다. GNP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막대한 군사비야말로 북한 경제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의식주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많은 아사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둘째, 정체성(identity)의 위기이다. 북한주민들은 자신들이 속한 정치체제에 대하여 소속감과 일체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국의 구성원들이 정체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상실한다면, 정치·사회적 통합은 그만큼 힘들고 위험해지기 마련이다.

셋째, 정통성(legitimacy)의 위기이다. 정통성의 위기는 정권의 합법성과 권위 등에 대한 인민의 동의나 복종이 여의치 않을 때 발생한다. 김정일은 정권을 세습적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국가지도자로서 정통성과 카리스마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넷째, 이념의 위기이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개인숭배 조장과 경제정책 실패 및 대외적 고립 등 부정적 측면을 노정시키고 있다. 주체사상의 호소력 약화는 북한 정권 및 체제의 정통성 약화로 이어지고, 동시에 체제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

다섯째, 대외관계의 약화이다. 동구 및 구소련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는 고립된 북한의 대외관계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탈냉전 시대의 특징인 국가간의 치열한 경제이익 추구 경쟁은 경제적으로 약하고 외교적으로 고립된 북한의 입지를 더욱 좁혀 놓았다.

이 주제에 있어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개혁개방 사례를 예를 들어 사회주의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설명해 준다.

둘째, 북한체제의 특성을 설명해 준 후에, 오늘의 북한 체제위기가 단일요인에 의한 것보다, 대내·외 환경변화와 이에 대한 지도층의 미흡한 대응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주지시킨다. 아울러 북한체제 전반에 걸친 근본적 개혁없이 는 북한의 미래가 밝을 수 없음을 이해시킨다.

북한에서는 불행히도 기본적 인권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북한체제의 비민주성 때문이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해결노력이 필요하다.

인권은 모든 인간이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반드시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하는 천부적 권리이다.

북한에서의 인권은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시하는 집단주의 원칙과 계급주의에 기초하여 천부적이고 절대적인 권리가 아닌 불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인권을 “인민이 가져야 할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및 사회적 제반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은 “온갖 착취와 억압이 청산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보장되는 것”이며 “계급적 원수들에게는 철저한 독재를 실시하는 것이 인권”(이상 「정치용어사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인권이 “제국주의자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반동적·반인민적 본질을 가리

우기 위한 궤변이며 기만술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자유민주세계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를 사회주의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평화적 이행전략’의 하나로 보고 있다.

북한의 인권침해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정당화되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 중 특히 심각한 것은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한 가혹한 탄압이다. 현재 국제인권단체나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북한에는 5개소 이상의 정치범 수용소에 20만명 가량의 정치범들이 인간이하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근무했던 탈북자 안명철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유나 인권이란 말은 사치에 지나지 않는다. 일단 수용소에 들어오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으나, 그래도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쳤다.”고 폭로한 바 있다.

북한의 인권유린을 개선하는 일은 통일과정에서는 물론 통일후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강조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유린의 구체적 사례에 관해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탈북자 수기나 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 등을 읽고 토론하도록 한다.

둘째, 북한의 인권유린은 통일 이후 사회의 조화로운 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통일조국의 미래상과도 배치되는 것임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이 내걸고 있는 각종 주장들은 공산화 통일전략에 기초한 것으로서, 내부문제를 간섭하지 않기로 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의 비효율성,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의 한계, 사회주의권 붕괴 등으로 인한 경제사정의 악화와 그에 따른 정치·군사적 역량 및 사회통제의 불안정 등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남한에서의 혁명역량 배양은 남한의 경제발전과 정치적 민주화의 성공적 실현 및 군사안보적 기반 강화 등으로 그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 해체, 미진향장기수의 송환, 콘크리트장벽 철폐,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개최 등을 계속 주장하면서 남한내 국민여론의 균열을 유도하고, 친북세력에 대해 통일투쟁의 분위기를 고취하는 한편, 북한주민들과 해외교포들의 결집을 도모하여 북한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남관련 주장들의 내용과 의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다. 북한은 한·미 방위협력체제를 혁명과 건설의 임무 수행에 가장 큰 장애이며 북한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큰 위협으로 인식해왔다. 따라서, 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둘째,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이다. 북한은 국가보안법을 민족적 단결과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반통일적인 법으로 규정하여 이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보안법이 철폐되면 남한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남한내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인사들의 연공활동이 합법화되어 자유민주정권의 인민정권으로의 교체는 물론 공산화 통일 달성이 그만큼 용이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셋째, 콘크리트장벽 철거 주장이다. 북한은 휴전선 일대에 설치되어 있는 군사용 콘크리트구조물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이른바 '콘크리트장벽'은 북한의 탱크침공을 지지하기 위해 우리 군이 '78~'79년에 중·서부전선 비무장지대 남쪽 개활지에 설치한 대전차 장애물이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강조하여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통일방안 등 대남제의를 할 때, 수락하기 힘든 전제조건이나 요구 사항들을 덧붙이는 의도를 이해시켜야 한다. 이는 제안의 진정한 의도가 대남관계 개선과 통일 자체에 있기 보다는 선전공세에 우선적 중요성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남·북한은 동족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군사적으로 대결하고 정치·외교적으로 경쟁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도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함을 이해시키도록 한다.

국제질서의 변화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진영대결이 와해된 오늘날의 세계질서는 우리 민족에게 분단 이후 그 어느때보다 통일에 유리한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다.

오늘날 국제정세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간에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익우선주의와 새로운 민족주의의 추구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적 차원의 전쟁위협은 사라졌다 할지라도 지역수준에서의 다양한 무력충돌과 민족적, 종족적, 종교적, 영토적 분쟁의 위협은 오히려 훨씬 더 증대하고 있다.

탈냉전시대의 국제정세는 몇가지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냉전시 양극구조이던 국제체계가 군사적 측면은 미국이 주도하고, 정치·경제면은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협력하는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은 군사적으로 여전히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개방과 자유무역시대를 주도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둘째, 이데올로기 중심의 군사안보적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자국이익이 중시

되는 경제전쟁시대가 도래하였다. 초일류만이 살아남는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각국은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중심으로 한 국가들간의 상호협력관계를 강화시키고 있다. 이런 지역적 조직체(EU, NAFTA, APEC 등)들은 영내 국가들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이점도 있지만, 반면 블록간 과도한 경쟁으로 충돌과 마찰을 조성할 수도 있다.

셋째, 탈냉전의 세계에서는 정치, 군사, 이념 등에 한정된 쟁점들이 아니라 개인들의 일상생활과도 직결된 전세계적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무역, 금융, 자원, 식량, 인구, 환경 등과 더불어 마약, 범죄, 테러 등도 국가들의 대외관계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쟁점영역들은 국가들간의 협력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갈등과 충돌을 야기시키는 요인들이 되고 있다.

넷째, 탈냉전의 세계에서는 비정부적 차원(NGO)의 활동이 집차 증가되고 있다. 이는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가 어떤 이데올로기적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범위가 확대된데 기인하는 것이다. 또한 초국가적 국제기구들의 역할이 크게 증대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특히 유엔은 세계여론의 주도기관 및 분쟁조정자로서의 기능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전세계적인 탈냉전의 흐름은 우리 민족에게 분단이후 그 어느때보다 통일에 유리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 남북간의 이데올로기적 대결과 군사적 대치상태는 탈냉전의 세계질서 속에서 부자연스러운 일로 인식되고 있으며, 새로운 변화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은 하루빨리 냉전과 이데올로기적 대결의 식에서 벗어나 실사구시적 세계질서에 동참해야 한다.

이 주제에서 특히 강조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강경·폐쇄노선은 탈냉전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북한의 낙후와 붕괴를 촉진하는 요인임을 설명해준다.

둘째, 한반도는 아직 냉전의 와중에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화해와 통일은 쉬운 일이 아니며, 장기간의 인내와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셋째, 우리가 변화하는 탈냉전의 세계체계를 통일여건으로 얼마만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과제에 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주변국의 대한반도정책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유지에 초점이 맞추어진 주변국의 대한반도정책과 우리의 통일정책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동적 노력이 필요하다.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한반도 주변의 동북아지역은 냉전적 대립과 갈등이 첨예하던 지역이었으나 오늘날에는 화해협력의 긍정적 추세가 전개되면서도 한편으론 위기와 갈등이 동시에 표출되는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미국은 한국과의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북한과도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계기로 미·북 협상을 통해 사실상 북한 정권의 실체를 인정하였으며, 이미 「제네바합의서」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양국간에 연락사무소 설치가 이루어진다면 쌍방간 외교적 관계는 한층 더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봉쇄나 고립화정책보다는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북한 스스로 변화하도록 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북한체제의 붕괴보다는 체제안정 속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미국의 대북정책의 핵심이다.

주변국가들의 대한반도정책들을 종합해 볼 때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주변국가들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지역내 대결적인 양극화를 추구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양극적 대립구조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대신 주변국가들은 역동적 외교관계를 통해서 국가들간의 정상적 관계수립 및 유지에 보다 큰 관심을 두고 있다.

둘째, 주변국가들은 세력균형에 바탕을 둔 지역질서 유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즉 주변국가들은 형성된 대결적 구조들을 부분적으로 해체시키는 선에서 현상변화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셋째, 동북아지역내 국가들간의 관계에서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크게 증가되고 있다. 비록 역내 국가들이 전통적인 세력균형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그들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주변국가들은 그들의 대한반도정책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어느 국가도 한반도 내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이 곧 동북아지역 전체의 불안정을 야기시킬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주제를 다룸에 있어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변국들은 교류와 협력을 지향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호경쟁과 견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가 한반도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한반도는 그들의 전략적 이해관계속에서 계속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 독일, 예멘 등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도 좋을 것이다.

둘째, 평화유지에 초점이 맞추어진 주변국의 대한반도정책이 곧 우리의 통일정책과 부합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통일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의 변화

냉전 이후, 북한경제의 위기와 남북한 체제역량 격차의 심화로 남한 주도의 통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남한당국을 기피하려는 북한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포용적 입장에서 통일논의를 주도해 가고 있다.

분단이래 남북관계는 지속과 변화의 양면성을 보여 왔다. 아직도 한반도에는 군사적 억지력에 의한 불안정한 평화가 유지되고 있을 뿐 전쟁의 위협은 상존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상호접촉과 대화를 통해 쌍방관계의 개선과 통일을 위한 합의서 등이 발표되기도 했다. '72년에 발표된 「7·4남북공동성명」과 '92년에 발표된 「남북기본합의서」등이 대표적 예이다.

남한과 북한은 각기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우선 북한의 중요한 변화는 김일성의 사망과 김정일의 공식적 권력승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외형상의 '김정일 시대' 개막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책노선 및 통치행태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정일은 소위 '강성대국론'을 주장하며 사상·군사부문의 강화를 추구하면서, 군부세력에 기반을 둔 막후통치를 하고 있으

며, 김정일의 권력승계와 함께 북한 내부에서는 권력엘리트의 교체가 계속되고 있다. 소위 혁명 제1세대들이 권력전면에서 사라지고 있으며 새로운 세대에 의한 지배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 결과 내각의 각료 31명 중 24명이 신진인물로 등용된 것만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난은 비록 제한적이지만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북한이 나진·선봉지역 등을 개방특구로 설정하여 해외투자를 유치하려는 것은 바로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은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핵개발 의혹을 계기로 북한은 과거부터 추진해 온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4차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문제를 협의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로부터 경수로 건설을 지원받고 있으며 미국으로부터 중유 등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다. 이와 같이 전에 비해 미·북한 관계는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남한 내부의 변화도 매우 괄목할 만하다. 무엇보다도 민주화 과정의 진전은 통일여건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자유로운 선거에 의한 평화직 정권교체는 우리사회에서 확고한 제도와 관행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사회구조의 전문화와 분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정치참여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체제는 한층 더 공고해지고 있다.

최근 남북관계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종교적 측면에서 점차 교류와 접촉의 빈도와 폭이 커지고 있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북식량 지원과 더불어 대북경제협력 확대 움직임 등은 새로운 변화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학계, 문화계, 종교계 등에서의 대북접촉도 증가추세에 있다.

남북당국 사이의 대화는 '98년 4월 북경에서 열린 남북당국대표회담 이후 아직 아무런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징경분리에 입각한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성있게 실천해나갈 경우 쌍방간의 비정치적 교류와 협력은 계속 증가될 것이다. 이러한 민간 차원의 비정치적 교류와 협력의 성과들은 남북당국간의 접촉과 대화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주제에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과 북한의 개별적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남북한의 개별적 변화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한 미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경분리 등 대북 포용정책이 북한의 대남전략과 전반적인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과 평가를 해보도록 지도한다.

통일의 촉진 · 장애요인

남북간의 교류협력, 남한의 민주화과정 등은 통일의 촉진요인이요, 반면 북한의 지속적 대남 혁명전략과 상호불신, 이질화현상 등은 통일의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다.

통일문제의 해결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통일과정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가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먼저 통일의 촉진요인을 살펴보자.

첫째, 국제환경면에서 볼 때 탈냉전의 세계사적 추세는 거시적 측면에서 한반도 통일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탈냉전의 세계는 비록 복잡한 불안정성을 수반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 냉전시대와 달리 국가들간에 개방과 협력을 촉진시키는 반면 대결과 갈등을 축소시켜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남북분단이 냉전의 산물인 만큼 한반도 주변상황의 탈냉전화는 분단을 극복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주변국가들의 대북 관계개선은 남북통일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대북관계 정상화는 북한체제의 폐쇄성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북한의 개방화를 이끌어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남북간의 교류협력도 북한사회의 변화 및 남북한간의 화해와 신뢰의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남북한간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교류의 확대는 통일을 위해 바람직한 것이다.

넷째, 현재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난은 그들의 개혁개방을 촉진시키리라는 점이다. 즉 북한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외개방과 협력을 모색해야 하며, 이 경우 북한의 대남정책은 일부 수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한국의 민주화는 통일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의 민주화는 통일정책 결정의 개방화를 가능케 할 것이다. 나아가 그것은 통일정책에 대한 폭 넓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통일의 장애요인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변치않는 공산화 혁명전략이다. 비록 남북기본합의서에는 서로 공존과 협력의 원칙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북한의 통일에 대한 기본입장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

둘째, 남북한간의 이질화현상이다. 남한사회가 민주화로 인해 더욱 다원화되고 있는 반면 북한사회는 여전히 유일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이런 사회구조적 차이에 의한 이질화의 심화는 결국 남북통합을 점점 어렵게 하고 있다.

셋째, 남한사회내의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열의의 저하도 통일의 장애요인이 된다. 이런 열의의 저하는 통일을 실현하는데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합의기반의 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내의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의 분열과 대립현상도 통일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지역의 세력균형구조가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지역내 국가들간의 관계는 현상변화 보다는 현상유지에 초점을 두고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주변국들은 현상유지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이 주제를 다룸에 있어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을 다양한 시각에서,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국민들 사이에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통일회의론, 통일소극론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끔 하고, 주위에 그러한 견해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해 직접 발표케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분단국 통일의 교훈

분단국의 통일경험은 통일이전에는 분단의 인정적 관리가, 통일과정에서는 주변국의 지지와 협조가, 통일이후에는 민족의 내면적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교훈으로 주고 있다.

분단국이 통일국가를 이룩한 과정이나 방법은 각기 상이했으나, 그들의 통일경험이 아직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크다.

첫째, 분단상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이다. 예멘의 경우 북예멘과 남예멘간의 분열과 갈등이 있었지만, 이미 '81년 12월에 「남북예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쌍방간에 상호 적응하는 협상과정을 지속해 나갔다.

동·서독의 경우에도 비록 동독의 체제 붕괴에 따른 서독으로의 편입방식으로 통일을 실현했지만 그 이전부터 양독은 분단관리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이미 '72년 12월에 양측은 「동서독기본조약」을 체결하여 그들간의 쌍무적 관계를 조정·관리하였다. 동·서독이 '73년 유엔에 가입 이후 서로 다방면에 걸친 통신, 교류, 협력 등을 확대하여 체제상의 동질화를 추진해 나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독일의 경우처럼 분단국이 통일국가를 실현하는데 있어서는 적지않은 부담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통일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통일을 포기할 수는 없다. 통일비용은 소모적 비용이라기보다 생산적 투자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셋째, 통일과정 및 통일이후 단계에서 민족통합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통일은 정치적, 사회경제적으로 하나의 국가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통합은 내면적으로 민족구성원들의 가치관, 생활양식, 물질적 조건 등을 동질적인 상태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때 완전한 통일국가의 실현은 동질적 민족통합이 수반될 때 가능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분단국의 통일과정에서는 주변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우선 베트남의 경우 구소련이나 중국 등이 외교적, 군사적으로 개입하여 많은 영향을 미쳤다. 예멘의 통일협상에서도 아랍동맹이 협정체질을 유도해 나갔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도 통일과정에서 구소련이 보여준 분개입정책은 실제로 독일통일을 가능케 한 주요인이었다.

이 주제를 다룸에 있어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후유증이나 통일비용을 고려하여 통일기피증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통일이 가져다주는 혜택과 이익을 구체적 예를 들어 강조해야 한다. 또한 통일비용을 투자의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통일비용이 분단비용보다 적게 들 수 있음을 이해시킨다.

둘째, 통일과정에서는 때론 어느 정도의 희생과 부담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담과 희생이 있을 수 있는지를 토의해 보도록 한다.

대북정책 추진원칙

대북정책의 3대 추진원칙은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이다.

정부는 평화·화해·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통일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고, 또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당장 통일을 이룩하는 데만 주력하기보다는 우선 평화의 바탕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정착시키고, 통일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자는 것이다. 즉 실사구시(實事求是)적 차원에서 평화와 공존의 남북관계 정착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대북정책의 3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이다. 한반도에서 평화의 토대를 튼튼히 함으로써 무력충돌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한 표시라 할 수 있다.

둘째, 흡수통일 배제이다. 우리는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통일한 의사가 없으며 나아가 북한의 붕괴를 촉진하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란 집이다. 반세기에 걸친 적대와 반목으로 상호 이질화가 심화된 상태에서 일방적·급진적 통일을 추진할 경우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남북간의 평화공존을 통해 상호신뢰와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셋째,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이다. 분단이후 누적되어 온 남북간의 적대감을 해소하고 상호이해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선 우선 가능한 분야부터 화해·협력을 추진해 나가면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 주제를 다룸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남북관계를 볼 때 당장의 통일을 추구하는 정책보다는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이 더욱 필요하며,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통일에 이르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의 대북정책이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음을 주지시킨다. 즉 호진적이며 대남 혁명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을 화해·협력으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며, 북한의 의지를 선의로 해석하여 일방적으로 때푸는 시혜적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대북정책 추진기조

대북정책의 추진기조는 △안보와 협력의 병행 추진, △평화공존 및 평화교류의 실현, △화해·협력을 통한 북한변화 유도, △남북상호이익 도모,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추진이다.

정부는 대북정책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안보와 협력의 병행 추진이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안보와 협력은 두 개의 기본 축이다. 국가 안보역량을 공고히 해나가는 가운데 남북한 교류·협력에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하여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통일여건을 조성해 나갈 수 있다.

둘째,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 실현이다. 당장 실현이 어려운 통일은 시간을 두고 달성하더라도 무력대결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공존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대로 남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통일로 가는 출발점임을 명확히 하고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셋째, 화해·협력을 통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이다. 북한의 비합리적 태도에 대해서는 의연하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가되 남북간에 보다 많은 대화, 보다 많은 접촉, 보다 많은 협력을 추진하여 북한이 스스로 변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넷째, 남북간 상호이익의 도모이다. 장기적 안목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주거나, 일방적으로 받으려고만 해서는 안되며, 서로간에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민족 전체의 공동발전과 대승적 차원에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다섯째, 남북당사자 해결원칙하의 국제적 지지 확보이다. 남북간 문제는 남북당사자가 직접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남북당사자원칙에 입각 남북당국간 대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 추진이다. 대북정책은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적 지지와 합의를 바탕으로 일관성과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한다.

첫째, 안보와 협력의 병행추진이 모순되지 않음을 충분히 이해시킨다. 즉 적대적 관계의 '안보'와 동반자적 관계의 '협력'의 병행추진이 이율배반적이지 않고 남북협력이 강화될수록 안보상의 부담을 줄여갈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의 대북정책이 획일적 유화정책이 아니고 북한을 개혁과 개방, 공존공영의 길로 끌어내는 적극적인 개방 유도정책이라는 점을 확실히 이해시킨다.

우리의 통일정책은 평화적 방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적·민주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통일정책은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보완·발전되어 왔으나, 일관되게 유지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민족사적 정통성에 입각한 통일, △개인의 자유와 복지 그리고 민족의 번영이 보장되는 통일, △민주적 절차로서의 남북총선거에 의한 통일, △민족의 희생 없는 평화적 통일, △민족의 자존과 독립이 보장되는 자주적 통일의 추구가 그것이다. 또한 통일은 점진적인 단계를 거쳐야 한다. 통일의 과정으로서 먼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진 가운데 신뢰회복을 이루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의 통일정책은 통일을 실현함에 있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장되고 있는 구성원의 자율성과 동의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통일의 3대 기본원칙에도 잘 나타나 있다.

즉, 통일은 우리 민족의 뜻에 따라, 우리 민족의 역량에 의해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자주'의 원칙, 통일은 전쟁이나 상대방에 대한 진복을 통해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평화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는 '평화'의 원칙, 통일은 반드시 민족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기회가 보장되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하며, 통일된 조국은 7천만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민주국가이어야 한다는 '민주'의 원칙 등이 그 내용이다. 7·4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민주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의 원칙속에 수용하고 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강조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를 통일의 기본철학으로 한 우리의 통일정책은 민족구성원 모두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민족공동체를 이루자는 것인데 반하여, 북한의 통일정책은 수령중심의 주체사상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비교의 관점에서 설명해야 한다.

둘째, 역대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통일의 원칙으로서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게 함으로써, 7·4남북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둘러싼 북한의 자의적 해석에 대한 논리적 대응력을 갖도록 한다.

셋째, 민족구성원이 모두 통일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개별성원 각자가 통일문제를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시킨다. 그 보다는 민족성원 모두가 동의·수용할 수 있는 통일의 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길임을 지적해 준다.

남북대화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첫걸음이다.

'70년대 초 적십자 회담으로 시작된 남북대화는 그동안 여러차례 중단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90년대 들어 8차에 걸쳐 고위급회담이 개최되는 가운데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채택·발효되는 등의 진전이 이루어져 왔다.

남북대화에서 우리측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대화와 협상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화해와 협력의 바탕위에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남북간의 모든 문제는 책임있는 당국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설득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은 남북대화를 그들의 목표인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통해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실현'하는 투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실천을 통한 남북관계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

어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대화, 보다 많은 접촉, 보다 많은 협력을 다변적으로 추진해 간다는 입장이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민간 차원의 대화나 접촉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주제를 다룸에 있어 강조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는 당국간 대화를 통해 상호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관계개선을 이루려고 하는 반면, 북한은 당국간 대화보다 대민축회의 개최 등 통일전선전술 차원의 비당국간 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둘째,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 남북간의 합의사항 실천은 우리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쌍방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서만이 남북관계가 비로소 공존과 공영의 관계로 진입해 나갈 수 있음을 강조한다.

셋째, 남북대화나 접촉은 민간 차원에서도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적어도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질서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해 준다. 특히 통일의 본질문제나 정치·군사적 문제는 남북당국간의 대화가 아니고서는 풀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시켜 민간 차원의 대화·접촉이 갖는 의의와 함께 그 한계에 대해서도 균형있게 이해하도록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우리는 남북간 당사자 문제로 보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미국과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대립되고 있다.

현재 한반도는 일시적으로 전쟁이 중단된 '정진' 상태에 놓여 있다. 한반도 평화는 '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정전협정」에 의해 유지·관리되고 있으나, 현재는 일부기능이 효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싼 남북간의 입장 차이는 우리가 그것을 남북한 당사자간의 문제로 보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미국과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서 "남과 북은 현 정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간에는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상호불가침을 선언하였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평화협정만 체결하면 한반도 평화체제를 완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잠수정 침투 등 고의적으로 휴전협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행위를 자행하였다.

이러한 북한측의 태도에 대해 정부는 우선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정진체

제를 무실화(無實化)시키려는 데 대해 즉각 정전체제로 복귀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당사자는 남북한이며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는 정전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정전체제 파괴행위와 대미 평화협정체결 주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왔다. 그 결과 '94년 4월 16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참가하는 4자회담을 제안하게 되었다.

4자회담에 임하는 우리의 기본입장은 4자회담을 장기적 구도하에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에 안정적이고 실효성있는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남북한 당사자가 주도하고 미국, 중국 등 관련국은 보장역할을 수행하며, 평화체제 구축시까지 정전협정 등 기본합의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그동안의 경과를 살펴보면, 남북한과 미국이 참가하는 공동설명회와 그 후속 협의와 함께 여러차례 실무접촉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98. 9월말 현재 본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회담이 3차례 개최되었고, 본회담도 3차례나 개최된 바 있다. 여기서 북한측은 주로 미군철수와 북미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북·미 사이의 적대관계 해소가 필요하다고 하여 조속한 북미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결론적으로 4자회담에서 우리는 남북한 당사자의 주도하에 미·중의 보장 형식으로 한반도에서 실효성 있는 평화체제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와 대미 평화협정 체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주제의 지도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의 당사자는 남·북한이고, 미국과 중국은 어디까지나 정전협정의 관련 당사국으로서 협조자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은 타당성과 현실성이 없음을 이해시킨다.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있어 남북한 당사자간의 입장 차이가 무엇인가를 이해시키고, 특히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와 대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이 담고 있는 숨은 의도를 이해시킨다.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한 기본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남과 북은 이를 성실히 지켜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92년 2월 19일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하여 발효시킨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한 기본틀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 무엇보다 큰 의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남북기본합의서는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남북관계를 규율해 나갈 기본 장전(章典)이라 할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거레의 뜻에 따라”,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합의 천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남북기본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군사적으로 침범하거나 상대방 체제를 파괴 전복하지 않으며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공동발전을 도모하여 점진적이며 단계적으로

통일을 실현하겠다는데 남북 당국이 최초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 합의서는 남북 쌍방의 총리가 수석대표로서 서명하고, 남북의 최고당국자가 재가한 분단사상 최초의 공식문서로서, 이를 이행해 나갈 제도적 장치들과 구체적인 실천조치들을 폭넓게 담고 있다. 이런 점에서 「7·4남북공동성명」보다 역사적 의미가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과 발표는 그 자체로서 남북관계의 획기적 변화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남북간에 놓여있는 현실적 여건이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동합의서의 이행에 관하여 낙관만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는 단순한 정치적 선언으로서가 아니라 분열되어 있는 민족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복원시켜 나갈 수 있는 현실적 과제들을 하나씩 실행해 옮겨 나가는 통일예의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우리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 결코 이행될 수 없으며, 북한이 합의사항 실천에 성실한 자세로 호응해 나와야 한다. 7천만 겨레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의 의지를 담은 남북기본합의서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이 주제에서 강조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기본합의서」에 규정된 각 합의사항을 실천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준비해야 할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둘째, 「남북기본합의서」, 분야별 「부속합의서」 및 「비핵화공동선언」 등 남북간 합의사항의 실천은 우리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현실임을 이해시키고 쌍방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서만이 남북관계가 비로소 공존과 공영의 새로운 관계로 진입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는 남북한간의 불신관계를 신뢰관계로, 대결구조를 평화구조로, 이질화된 민족사회를 동질적 민족사회로 만드는데 큰 의의를 지닌다.

정부는 '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일명 「7·7선언」)을 발표하여 남북한이 분단의 벽을 허물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와 협력을 실현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89년 6월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고, 이어 '90년 8월1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공포하는 등 많은 법령을 제정하여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왔다.

사실상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차단되었던 민족적 일체감을 복원시키는 것이며, 이는 나아가서 통일로 갈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대화와 교류를 통하여 북한체제를 흡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함께 공존공영하면서 민족적 동질의식을 심화시켜 나갈 수 있는 가교를 놓자는 것이다.

대화와 교류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남북간에는 동족상잔의 전쟁을 경험하면서 적대와 불신관계가 깊어졌고

체제와 이념의 대립이 심화되어 갔다. 따라서 남북간에 대화와 교류가 없이는 적대와 불신, 그리고 이질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은 남북간에 대화와 교류를 수차례 가져온 지금까지도 한국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타도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한국의 실체를 인정한다고 합의를 해놓고도 실제의 행동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남북간에 아직도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실증하는 것이다.

남북교류협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과감한 개혁개방이 선행되어야 하며 북한내에서 한국기업의 투자와 기업활동에 대한 제약조건들이 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남북한 당국은 이러한 투자 교류협력, 투자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남북간의 화해 및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북한이 「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남북경제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남북경협은 경제논리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추진되도록 하는 정경분리 원칙을 실천하고 있다. 경협은 우선 북한이 시급히 필요로 하는 분야부터 추진할 수도 있지만, 상호이익이 되고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안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과 대만은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당국간 회담이나 합의없이도 막대한 규모의 인적·물적 교류를 하고 있음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이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강조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가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중시하고, 대북투자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남북한이 다같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고 동일기반을 닦는데도 크게 기여하리라는 점 때문임을 이해시킨다.

둘째, 통일은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데, 통일 이전에 남북교역을 활성화시키고 대북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그만큼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임을 설명해준다.

북한에 대한 지원은 일방적인 시혜의 차원을 벗어나 북한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은 '8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체제의 구조적 문제로 매년 100~200만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미 식량배급체계까지 무너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식량난은 집단농장제도로 인한 노동의욕 저하,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비료·농약 부족, 영농기술 낙후, 수송체계 마비 등이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 '95년부터 계속된 수해와 가뭄은 식량사정을 악화시킨 요인이지만, 북한 식량난의 근본원인은 아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식량문제는 외부의 일회성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구조적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농업부문의 개혁과 자원배분의 왜곡을 개선하는 자구적인 해결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이 당장 연간 부족량 200만톤 정도가 필요하다고 할 때 그들이 매년

투입하고 있는 GNP의 25%에 달하는 군사비의 5~6%만 줄여도 상당부분 해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만성적인 식량부족 문제는 중국이나 동구국가들이 농업부문 개혁을 실시한 후 2~3년만에 식량문제를 해결했던 것과 같이 농업개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북한 식량문제의 본질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북한에 대한 지원은 △북한 식량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유도하고, △북한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원물품을 군용으로 전용하지 않는다는 투명성을 보장하고, 군사비 감축 등 식량난 해소를 위한 자구적 노력을 취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고 있다. 또한 북한의 식량난이 구조적인 문제인만큼 농업부문 개혁 등 체계적이고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95년 6월 국내산 쌀 15만톤 지원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98년 9월말 현재 기준 우리의 대북지원은 3억 797만달러 상위에 이르고 있으며, 같은 기간 국제사회의 지원은 모두 6억 4,301만달러이다.

이 주제의 지도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식량난은 수제나 가뭄이라는 천재가 크게 작용했지만 북한의 식량난은 근본적으로 사회주의 농업구조의 모순, 농민들의 생산의욕 상실 등에 기인한 북한당국의 농업정책 실패에 기인하고 있음을 이해시킨다.

둘째,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식량지원보다 장기적으로 북한의 농업구조 개선과 남북간의 농업부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은 우선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시킴으로써 안보위험을 제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유지와 통일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가 국제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92년 1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한 이후 동협정을 근거로 실시된 사찰결과와 북한이 사전에 동기구에 신고한 내용간에 불일치가 발생한데서 비롯된다. 이러한 불일치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IAEA는 특별사찰을 요구하였고, 이에 북한이 반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93. 3)함으로써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긴장과 불안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양국정부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미·북간 고위급회담을 추진하였다. 미국과 북한은 '93년 두차례 회담을 가졌으며, '94년 9월 23일부터 속개된 제3단계 미·북 협상이 급진전하여 미국과 북한은 '94년 10월 21일 북한 핵문제 해결의 기본구도인 「제네바기본합의」를 채택하게 되었다.

제네바 기본합의의 가장 큰 의의는 무엇보다도 북한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

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는데 있으며, 주요내용은 △북한 흑연감속원자로의 경수로 발전소로의 대체, △미·북 관계개선, △한반도 비핵화노력, △북한의 비핵화 의무 이행 등이다.

「제네바기본합의」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대북 경수로지원사업은 북한의 핵개발 저지 및 그로 인한 남북 군사적 긴장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다. 또한 남북한이 분단이후 최초로 대규모 협력사업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와 남북간 신뢰구축에 기여하게 되고, 나아가 남북관계 개선 및 민족공동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는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을 △우리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반드시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민적 지지와 합의를 토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입장과 한·미·일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한 노력의 결실로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은 지금까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대북 경수로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경수로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확보해야 하고, 북한은 그동안 합의한 각종 의무, 즉 특별사찰 수락 등 핵동결 및 해체의무 이행, KEDO-북한간 각종 합의서 등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에도 경수로사업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한 KEDO-북한간 순조로운 합의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이 핵관련 시설을 동결하고 있고, 사용후 연료봉에 대한 봉인작업도 협조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핵동결 유지에 필요한 각종 의무사항은 물론 우리 건설인력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북측 인력 및 물자의 안정적 공급 등 제반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때 경수로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룸에 있어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핵 개발은 왜 막아야 하는지, 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대북 경수로 사업에 왜 우리가 중심적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 준다.

둘째, 대북 경수로 건설이 앞으로 남북관계에 미칠 긍정적 영향과 통일후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함으로써 우리의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을 이해시킨다.

통일사회의 미래상

**통일조국은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을 보장하는 선진민주국가
이어야 한다.**

통일된 조국은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이루려면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통일을 위한 바른 노력을 펼 수 있음은 물론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민주국가'를 통일의 미래상으로 밝히고 있다.

여기서 '자유'란 분단으로 인한 민족구성원 모두의 고통과 불편이 사라지고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며 정치적·경제적 자유가 확보되는 것을 말한다. '복지'는 민족의 총체적 역량이 크게 신장되어 풍요로운 경제를 이루고 그 혜택이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존엄성'이란 분단으로 인한 인간적 고통과 억압이 해소되고 법 질서와 정의의 기초 위에서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는 것을 말한다.

통일된 한국사회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구축된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다가올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선도하는 주역국가로서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선진 민주국가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특히 통일한국은 동북아 지역 평화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한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중심국가의 하나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주제의 교육과 관련하여 강조되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는 자유, 복지,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통일조국의 미래상이 있지만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에는 어떤 미래상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비교·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 각자가 통일사회의 주역임을 환기시켜 책임과 참여의식을 지니도록 일깨워준다. 통일은 민족구성원 모두가 통일조국 건설을 위한 주인이며 일꾼이라는 건전한 의식과 사명감을 지니고 참여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통해 우리 사회를 번영하는 민주공동체로 키워 나가는 일이야말로 통일을 앞당기고, 준비하는 지름길이다.

한반도 통일은 막연한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미지않아 실현될 수 있는 당면한 현실문제이다. 통일의 날이 멀지 않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제 통일준비를 서둘러야 함을 알려준다. 통일은 중대한 역사적 과업인 만큼, 통일 준비는 여러 분야에 걸쳐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통일은 한반도 전역에 하나의 '민족국가',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일이다. 남과 북에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참다운 통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정치적 안정 속에서 계속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고, 지속적 민주화 추진을 통해 선진 정치문화를 형성하며, 체제 내적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의 상이한 경제체제와 경제력의 격차를 감안할 때, 점진적으로 북한 경제력을 회복시키면서 서서히 경제공동체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남북 교류·협력과 병행하여 북한체제도 이에

상응하는 개혁·개방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경제에서 취약한 농업 및 생산기반시설 분야에서의 남북경제협력사업을 통해, 북한경제의 자생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통일 추진과 관련 중요한 과제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일이다. 국민적 합의 도출은 국론분열을 막고 통일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기반 위에서 수립된 통일 정책은 그만큼 강한 정통성과 추진력을 지닐 수 있다. 국민적 합의와 관련 또 하나 강조해야 할 점은 국민들이 통일에 따르는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마음의 준비와 각오를 다져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통일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대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지닐 수 있도록 주변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민족통일은 전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한민족을 포괄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해외동포들을 동참시킴은 물론 통일추진 과정에 그들의 견해를 수렴하려는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데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대내적 통일기반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민주발전, 경제번영, 사회정의, 국민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이것은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서 정신적·물질적 토대가 된다.

이 주제를 다룸에 있어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 준비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후일 혼란과 낭비 및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사항들을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함을 충분히 이해시켜야 한다.

둘째, 분단 극복을 위해서는 통일에 수반되는 비용과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시키고, 아울러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식 함양이 통일을 위해 중요함을 주지시킨다.

셋째, 원활한 통일 추진 또는 준비를 위해서, 내적으로 국민 합의를 도출하고 외적으로 주변국가들과의 원만하고 우호적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3

실행상의 유의점

(1) 목표 설정상의 유의점

- 통일교육은 교육대상의 특성과 수준에 맞추어 시행될 때 효과적일 수 있다. 각 교육단계별로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이 종합되어 전체적인 통일교육 목표에 수렴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한다. 각 교육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할 통일교육의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아 및 초등학교

통일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민주시민의 행위규범을 이해하고 이를 연마하도록 한다.
- 민족의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북한주민이 같은 민족임을 이해한다.
- 분단의 폐해와 고통을 탈북주민, 이산가족, 전쟁유가족 등 주위에서 접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를 통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 전쟁의 고통과 폐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한다.
- 북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소개하고, 남북한 주민이 살아가는 모습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린다.

중학교

통일문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북한 및 통일문제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 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민주주의 체제의 긍정적인 면을 이해하게 한다.
- 분단의 원인과 과정을 알아보고, 분단이 갖는 역사적 맥락을 이해한다.
- 우리 민족의 특성을 이해하고, 민족의 살아온 과정을 알아본다.
- 남북한이 추구하여 왔던 통일정책의 특성과 원칙이 무엇인가를 알아본다.
- 남북한 체제의 기본적인 특성을 비교적인 시각에서 이해한다.

고등학교

북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통일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양을 쌓게 한다.

- 사회주의체제의 생성과 몰락과정을 이해하고 민주주의체제가 갖는 장점과 단점

이 무엇인가를 알아본다.

- 분단이 남북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통일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을 따져본다.
- 바람직한 통일정책을 알아보고, 올바른 통일운동의 방법을 토론한다.
- 통일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을 예상해보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본다.
- 북한체제의 특성을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이해한다.

대학교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를 통해, 통일과정에서의 능동적인 참여를 가능케하고, 통일문제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통일이후의 상황을 전망하고 발생가능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 통일정책의 적실성을 검토하고, 시민사회의 통일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북한체제의 특성을 이해하고 북한체제의 변화양상을 전망한다.
- 통일의 세계사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국제적 환경변화와 한반도통일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 남북한 사회·문화 통합의 구체적인 방안을 토론한다.
- 통일문제에 대한 계층별·세대별 인식의 차이를 검토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사회교육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토대로 통일주체로서의 책임감과 역할인식을 고취한다.

- 통일의 내외적 환경변화와 북한의 변화전망을 이해한다.
- 통일에 따르는 비용과 부담, 그리고 실질적인 이익과 혜택을 알아본다.
- 통일이후 발생가능한 사회문제를 예상해 보고, 극복방안을 생각해본다.

(2) 내용 선정상의 유의점

- 교육내용은 논리적인 면에서나 사실적인 면에서 정확해야 한다. 또한 특정체제나 집단에 대한 적대감이나 편견이 개재되지 않아야 한다.
- 통일교육은 결론의 제시보다 결론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참고자료나 관련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함으로써 피교육자들 스스로 관련 문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분석·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3) 지도상의 유의점

- 교수자는 자신의 견해와 주장을 결론으로 제시하는 일방적 주입식 강의방식보다는 피교육자들이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 지지, 반대 또는 의문점을 기탄없이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화식 탐구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교수자는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특정기관이나 전문가의 견론이나 해석을 그대로 전달하거나 주입시키려 들지 말고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나 대안적 관점들을 적절하고 충실하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 즉 북한이나 공산주의에 대한 단정적 결론보다는 그와 같은 결론이 도출되는 근거나 이유를 사실대로 소개, 인용함으로써 피교육자 스스로가 그러한 근거에 입각한 합리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 교수자는 통일에 관한 다양한 주장이나 견해들이 개인, 집단, 국가의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기되고, 절충·타협되며, 어떻게 하나의 합의를 이루게 되는지를 직·간접적으로 체험케 하여, 피교육자들이 민주적 논의규범과 절차의 합리성을 습득하도록 돕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4) 교재 및 자료 제작상의 유의점

- 통일교육은 국가적·민족적 차원의 과제 해결을 목표로 한 의도적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이 추구하는 목표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교안의 준비와 활용이 필요하다.
- 교수자의 교안은 교육 대상별·과정별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로 3~4쪽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일정단위 시간당 1개의 교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한가지 교육전개안의 예를 들어본다.

〈 교육전개안 예시 〉

주 제 : 『국민의 정부-대북정책』 해설
 대 상 : 일반성인
 교수시간 : 80분용

주 제	교 수 내 용	지도시 유의점·강조점	소요 시간
1. 대북정책의 목표와 3대 원칙	○ 목표 : 「평화·화해·협력」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 현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 통일의 추구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이 급선무임을 강조	5분
	○ 3대 원칙 ·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 흡수통일 배제 · 북한이 개방과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화해·협력 적극 추진	○ 안보를 도외시하거나 일방적으로 베푸는 단순한 유화적·시혜적 정책이 아님을 설명	

주 제	교 수 내 용	지도시 유의점·강조점	소요 시간
2. 대북정책의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정세 · 이념보다는 국익을 중시하는 실리적 국제관계 지향 · 국가간 전략적 파트너십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정세의 변화가 한반도 통일에 미치는 긍정·부정적 영향을 설명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주변정세 · 한반도 주변정세는 기존의 냉전구조와 새로운 탈냉전적 변화가 병존 · 민족역량의 발휘를 제한하는 남북 대결구도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력균형에 바탕을 둔 현상유지 차원의 주변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정세 · 총비서 취임 등 김정일시대 공식 개막 · 경제난으로 체제위기 심화 · 제한적 개방, 대서방관계 개선 및 대내 체제단속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 결과 등을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사회 여론 동향 · 독일통일, IMF관리체제의 결과로 통일에 대한 유보적 태도 증가 · 통일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를 여론조사 등 구체적 통계를 들어 설명 	
3. 대북정책의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아 한민족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실사구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단에 따른 민족역량의 낭비와 통일이 가져다주는 혜택과 이익을 구체적으로 소개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간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촉진시킴으로써 급변사태없이 북한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적극적 참여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없이 맞는 급격한 통일의 위험성을 지적 · 분단국통일사례 등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국가들의 지지와 협조하에 추진될 수 있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국의 대한반도정책과도 부합됨을 설명 	

주 제	교 수 내 용	지도시 유의점·강조점	소요 시간
4. 대북정책 의 추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실천 ·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당국간 대화 추진 · 실천 가능한 분야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인 전면이행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간의 합의사항 실천은 우리의 일방적 노력만으로는 안되고 쌍방간의 성실한 이행이 필요함을 강조 	3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경분리」 원칙에 따른 남북경협 활성화 · 기업의 자율적 판단 존중 · 상호이익이 되고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사안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경분리」 원칙은 현시점에서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대안임을 설명 · 북한 점수점 침투사건, 금강산 관광, 미사일개발문제 등 예를 들어 언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가족 문제의 우선 해결 · 남북적십자회담 추진 및 국제협력 활동을 통한 이산가족 교류 추진 · 면회소·우편물교환소·고향 방문단 교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남북간의 인식차이 설명 · 남한: 인도적 문제 · 북한: 정치적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 식량지원의 탄력적 제공 · 인도적 대북지원은 지속 · 정부의 대규모 지원은 상호주의 적용 · 남북 농업개발협력 등으로 북한 식량문제의 구조적 해결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이원화하는 시각 제시 ○ 대북포용론과 「상호주의원칙」은 일견 모순되게 보일 수 있으나, 「상호주의」원칙 또한 포용적 입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모순되는 것이 아님을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수로 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 북한 핵동결의 대가 및 중장기적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일환 ·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수로사업이 단순한 부담과 희생이 아니라 통일을 위한 투자임을 강조 	

주 제	교 수 내 용	지도시 유의점·강조점	소요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평화환경 조성 · 남북한 당사자 해결원칙하에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기본합의서」를 실천 · 4자회담 등을 활용,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평화문제가 갖는 국제적 성격을 설명해줌으로써 4자회담이 통일문제에 있어 남북당사자해결원칙과 상치되지 않음을 설명 	
5. 일관성있는 대북정책 추진의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체제의 특성상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일관성있게 추진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에 있어 「일관성」이 중요함을 구체적 예를 들어 설명 · 북핵의혹사건, 대북쌀지원 등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단 수립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지지의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적 합의와 지지의 바탕위에서만 정책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강한 추진력을 지닐 수 있음을 설명 	

(5) 평가상의 유의점

- 교수내용에 대한 피교육자의 숙지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성인교육 형태의 학습 과정에서 언제나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교수내용의 인지정도를 평가하는 일은 자제되어야 한다.
- 그러나 담당교수자에 대한 총평과 인상, 교수된 내용에 대한 피교육자들의 반응은 다각적으로 수집해 둘 필요가 있다. 이것은 바로 통일교육의 효과를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간접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 록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남북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2 장 남북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 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3 장 남북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 북 고 위 금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금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서 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분야에서 자주독립 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 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 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

*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개정된 북한헌법 전문임.

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적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빨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의 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융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

제 1 장 정 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

권을 행사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6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인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13조 국가는 균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

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14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제 2 장 경 제

제1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 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22조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 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제23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2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융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

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 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제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제29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 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제30조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노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32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 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옹계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

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옹계 리용하도록 한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옹계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높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37조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제38조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 3 장 문 화

제3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 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제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에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42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노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5조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 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49조 국가는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제5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2조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 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에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제53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제54조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 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 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56조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 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제 4 장 국 방

제5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제5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세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

을 관철한다.

제61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군사규율과 군중규율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제 5 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64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65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66조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견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

제69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 처리하도록 한다.

제70조 공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노동능력있는 모든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노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71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노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3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4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75조 공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76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77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노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78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79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제8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 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제81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82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83조 노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노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노동규률과 노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85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 6 장 국가 기구

제 1 절 최고인민회의

제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88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제89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90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 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재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총리의 재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11.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93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제96조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회의는 대의원 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97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제 2 절 국방위원회

제100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국방관리기관이다.

제101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전반을 지도한다.

제103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2.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 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5. 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04조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제105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 3 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0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10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제10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1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 법안과 규정안, 현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체택하며 체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 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 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 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3.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16.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7. 대사권과 특사권을 행사한다.
1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제111조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 4 절 내 각

제117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제118조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의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제119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 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 직속기관, 중요 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채산,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노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화폐와 은행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20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제121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22조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3조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24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25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26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127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 관리기관이다.

제128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제129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지시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30조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제 5 절 지방인민회의

제131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2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3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34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35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36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37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138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제 6 절 지방인민위원회

제139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 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제14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법령, 정령,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5.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8.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하급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1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4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제143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4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4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에 복종한다.

제 7 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147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 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48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9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50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범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의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51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제152조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53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54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5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56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수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57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158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159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제160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61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62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 7 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제1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땅아올려 감은 비이삭의 타원형태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위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6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폭이 있고 붉은폭의 기대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는 1대 2이다.

제16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제16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집필진	신정현	경희대학교	교수
	전인영	서울대학교	교수
	정석홍	전남대학교	객원교수

통일교육기본방향

1998年 11月 12日 印刷

1998年 11月 18日 發行

發行處 統 一 部

統一政策室 政策2擔當官室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7

☎ 722-0390

〈非賣品〉

